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최조웅 의원 외 9명

나. 의안번호 : 제1597호

다. 발의일자 : 2017. 2. 3

라. 회부일자: 12017. 2. 7

2. 제안사유

○「환경분쟁 조정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목적 규정을 구체화하고, 중재제도 신규 도입에 따른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시민의 환경권익 구제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목적 규정 구체화(안 제1조)

- 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수 확대(안 제2조제1항)
- 다. 중재제도 도입 관련 운영 규정 신설(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
- 라. 중재신청 수수료 규정 신설(안 제7조 및 별표)

4.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환경분쟁 조정법」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 조치 : 해당부서 협의

다. 기 타:

- 1) 신ㆍ구조문 대비표 : 별첨
-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별첨

5. 검토의견

가. 개요

○ 본 조례안은 「환경분쟁 조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목적 규정을 구체화하고 위원회 위원수를 20명 이내로 조정하며, 중재제도 신규 도입에 따른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시민의 환경권익 구제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1) 환경분쟁조정제도(위원회) 개요
 - 환경분쟁조정제도는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 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시민의 건강·재산상의 피해를 구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환경피해로 인한 정신적·재산상 피해 조사, 인과관계 규명, 피해 배상액 산정과 분쟁해소를 위한 알선·조정·재정·중재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환경분쟁조정(調整)의 종류>

○ 알선(斡旋): 당사자의 자리를 주선하여 분쟁당사자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

○ 조정(調停) : 사실조사 후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간의 합의를 수락 권

고하는 절차

○ 재정(裁定) : 사실조사 후 재정위원회가 인과관계의 유무 및 피해액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재판에 준하는 절차

○ 중재(仲裁): 당사자간의 합의로 재산권상의 분쟁 및 당사자가 화해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비재산권상의 분쟁을 중재인(仲裁人)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

○ 현행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공무원 및 각 분야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총 15명의 위원 으로 구성되어 있음.

총 원	공무원	변호사	교 수				전문가	
			자연과학	환경미생물학	환경공학	환경법	대기질	소음진동
15명	2명	6명	1명	1명	2명	1명	1명	1명

- 2) 목적 규정 구체화, 위원 정원 확대 및 중재제도 관련 규정 신설(안 제1조, 제2조제1항,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제1항 및 별표)
 - 안 제1조 및 제2조제1항은「환경분쟁 조정법」개정으로 지방조정위원회 정원이 15명이 비에서 20명이내로 확대(제7조제2항)되고 조례 위임에 관한 사항이 추가(제15조제2항)됨에 따라, 본 조례의 목적 규정에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위원회 위원수를 20명이내로 조정하는 등 상위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환경분쟁 조정법』주요 개정('15.12.22) 사항

- 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한 중재제도 신규 도입
- 환경분쟁 조정 대상 확대(제5조) :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를 환 경피해 범위에 포함
- 위원회 위원 정수의 확대(제7조제2항): 15명 이내 → 20명 이내
- 위임조례 근거 문구 변경(제15조제2항) : ~ 운영과 ~ → ~ $\frac{7}{2}$ 및 운영과 ~

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제1항 및 별표는 조정 및 재정제도 외에 중재제도 신규 도입에 따른 중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중재신청 수수료에 관한 사항 등 「환 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개정 사항(제3조제2항 등)을 조례에 신설하는 등 시민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절차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안 개정 내용은 시 기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주요 개정('16.11.18) 사항

- 1억원 이하 중재신청사건의 지방조정위원회 관할(제3조제2항) 및 중재제도 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규정(제9조 이하)

관계법령

「환경분쟁 조정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분쟁의 알선(斡旋)·조정(調停)·재정(裁定) 및 <u>중재(仲裁)</u>의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환경피해"란 사업활동,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진동, 악취, 자연생태계 파괴, 일조 방해, 통풍 방해, 조망 저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인한 건강상·재산상·정신상의 피해를 말한다. 다만, 방사능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제외한다.
- 2. "환경분쟁"이란 환경피해에 대한 다툼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2호

- 에 따른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을 말한다.
- 3. "조정"(調整)이란 환경분쟁에 대한 알선·조정(調停)·재정 및 중재를 말한다.
- 4. "다수인관련분쟁"이란 같은 원인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주장하는 자가 다수(多數)인 환경분쟁을 말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 ① 중앙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상임위원은 3명 이내로 한다.
- ② 지방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상임위원은 1명을 둘 수 있다.
-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규칙 제정 등)

- ① 중앙조정위원회는 위원회의 소관 사무 처리절차와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과 조정(調停)·재정 및 중재위원회의 각 위원장 선임방법 등 구성에 관한 규칙을 정할 수 있다.
- ② 지방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3조(관할)

- ① 법 제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쟁"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지방환경분 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조정위원회"라 한다)가 스스로 조정하기 곤란하다고 결정하여 이 송한 환경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을 말한다.
- ② 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조정위원회가 관할하는 분쟁의 재정 및 중재사무는 조정 목적의 가액(價額)(이하 "조정가액"이라 한다)이 <u>1억원 이하인 분쟁의 재정 및 중재사무로 한다.</u> 다만, 법 제4조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조정위원회"라 한다)에서 진행 중이거나 재정 또는 중재된 사건과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분쟁의 재정 또는 중재사무는 제외한다.

제9조(예상 피해로 인한 분쟁의 알선·조정·재정 또는 중재 신청)

예상되는 피해로 인한 분쟁의 알선·조정·재정 또는 중재의 신청은 사업의 시행자·규모·위치· 기간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이 관계 법령에 의한 절차에 따라 결정된 후에 할 수 있다.

제10조(신청의 변경)

위원회의 위원장은 신청인 또는 참가인이 서면으로 알선·조정 또는 재정을 구하는 취지나이유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알선·조정 또는 재정의절차(이하 "분쟁조정절차"라 한다)를 현저히 지연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상대방에 대한 통지)

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신청 또는 제10조에 따른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 부본 (副本)을 첨부하여 그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조정의 처리기간)

- ① 법 제16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 1. 알선의 경우: 3개월
- 2. 조정·재정 또는 중재의 경우: 9개월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제1항의 기간을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 1.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
- 2. 농작물의 피해로 인한 분쟁, 인체의 피해로 인한 분쟁 등 인과관계를 입증하거나 배상 액을 산정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경우

제13조(신청의 철회)

알선·조정·재정 또는 중재의 신청인, 신청인의 선정대표자·대리인, 대표당사자 또는 참가 인은 해당 절차가 종결되기 전에 서면으로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중재의 경우에는 피신청인이 신청의 철회에 동의한 경우에만 철회할 수 있다.